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진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8
----------	-----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의자 : 이진환, 전해연, 박경원,
박윤옥, 이경숙, 한근수,
정현미, 김지훈(민)

1. 제안이유

- 남양주시의회 의원배지의 규정을 현실화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 변경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

나. 의원배지 훼손·분실에 따른 재교부 시 의원이 비용을 자부담하는 조항을 삭제 (제7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백색”을 “짙은 밤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 회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 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 의 바탕은 <u>백색</u>으로 한다.</p> <p>3. (생 략)</p> <p><u>② 의원배지의 재료는 은 또는 동으로 하되, 휘장 바탕 및 “의 회”자는 금색으로 내부 원의 바 탕은 백색으로 한다.</u></p> <p>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 ② (생 략)</p> <p><u>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u></p>	<p>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짙은 밤색</u>----</p> <p>3. (현행과 같음)</p> <p><u>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 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 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u></p> <p>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배지모형도 및 규격

(모형)



(규격)

모 형 내 용	규 격	색 채
무궁화형 5지	직 경 18mm 테두께 3mm	금 색
무궁화 내부 원형	외 경 9mm 내 경 8mm	짙은 밤색
“의회”자의 크기	3.5mm	금 색
두께	2mm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동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왕은선